<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u> <u>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 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120100402		
최초 등록일	2012.08.10	최종 등록일	2023.03.21

리킨치킨 정보공개서

[세음 F&B]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음 F&B

대	丑	번	호	:	0 2	- 4	3 3 -	1 0	0 8	팩	스	번	호	:	02-2212-6640
가 맹	사 업	운 영	부 서	:	체	인	사	업	부	가 맹	부 서	전 :	화 번 :	호 :	02-433-1008
	3	주소				서울특별시 중링			중랑	구 망	우로 3	0 길	8, 4 ह	층(싱	봉동, 동일빌딩)
홈	페	이	7	지	٧	ww.	lickin.	co.k	r	대	₩	0	메	일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세음 F&B의 "리킨치킨")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리킨치킨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립일	2005 년 10 월 24 일			
사업자등록일	2005 년 10 월 24 일	사업자등록번호	206-20-53078		

*1998 년 3 월에 디오니스체인사업본부로 최초 사업자등록 후 2001 년 8 월에 디오니스체인사업본부로 상호를 포함하여 양수도하고, 2005 년 4 월에 디오니스체인사업본부를 씨에스에프가 양수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구 분	상 호	/	ol	름	대	丑	자	대	丑	번	호
가 맹 본 부	<mark>가 맹 본 부</mark> 세음 F&B					권 진 형			02-433	-1008	
		영 업	丑	지	주						소
특수관계인(임 원)	해 당 없 음	리킨	치킨 외	2		서울시 경 4 층 405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리킨치킨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리킨치킨	리킨치킨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없음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1	I	-	31.946	1	_
2022 년	-	-	_	28,673	-	_
2023 년	_	_	_	17,335	_	_

^{*} 상기 표의 2023년 매출액은 당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상기 매출액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건인어구	66	ㅋ귀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권진형	대표	2005년~현재	세음 F&B	대표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점	임원	수(명)	지이스/대)
기 군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0	0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리킨치킨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71011 11 11	JI O E O D	디오니스	2016년 2월~현재	소시지 호프 전문점 가맹사업
가맹본부 	세음 F&B	알바트로스	2016년 2월~현재	독일풍 맥주 전문점 가맹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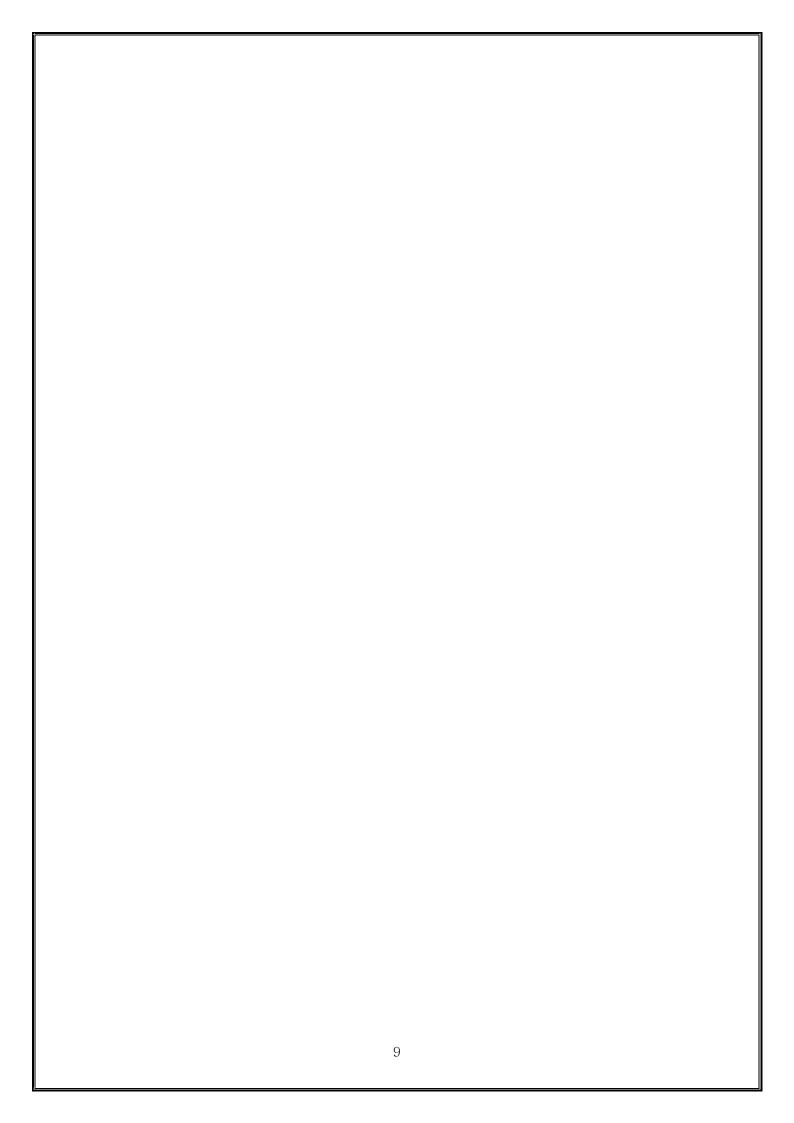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리킨치킨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인)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상표 / 서비스표	Lickin' 리 킨	2005.03.11	4101137560000	권관식	2025.03.11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리킨치킨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5년 10월 21일 입니다.

*2016년 2월에 리킨치킨을 세음 F&B 가 양수하였습니다.

2. 리킨치킨의 연혁

리킨치킨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씨에스에프	리킨치킨	권관식	2005.10~2014.11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2-73 화성빌딩 5층
씨에스에프	리킨치킨	권관식	2014.11~2016.02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1 길 24 (용답동,1 층)
세음 F&B	리킨치킨	권진형	2016.02~2017.12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1 길 24(용답동)
세음 F&B	리킨치킨	권진형	2018.01~현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0 길 8, 4 층 405 호(상봉동, 동일빌딩)

3. 리킨치킨의 업종

리킨치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71212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리킨치킨	치킨	치킨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리킨치킨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리킨치킨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N H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3	3	0	2	2	0	2	2	0
서울	3	3	0	2	2	0	2	2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리킨치킨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리킨치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5	0	2	0	0	3
2022 년	3	0	1	0	0	2
2023 년	2	0	0	0	0	2

6. 리킨치킨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리킨치킨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가맹사업명	운영주체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가맹	점 / 직영점	d 수
11371EB	경사합성 군영구세 합중	8 급표시	등록번호	2021 년	2022 년	2023 년	
디오니스	세음 F&B	호프전문점	디오니스	20080100270	16(0)	16(0)	16(0)
알바트로스	게금 F&D	맥주전문점	알바트로스	20080100268	14(0)	11(0)	11(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당사는 pos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물류를 공급하고 있으나 물류의 일부분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전반적인 매출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리킨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서 이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VAT미포함)					
	00001401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매출액(하한)	ᆈᅕ
지역	2023 년말	어지탱크	머지	٥	한	하	·한	· 산출 · 가맹점수
	가맹점수	연간평균	면적	ᅱᄀᆒᅕᅅ	3.3㎡당	ᅱᅱᆒᅕᅃ	3.3㎡당	가갱삼구
		매출액	3.3㎡당	최고매출액	최고매출액	최저매출액	최저매출액	
전체	2			산	출불가			0
서울	2			산	출불가			0
부산	0			해당없	음(5곳미만)			0
대구	0			해당없	음(5곳미만)			0
인천	0			해당없	음(5곳미만)			0
광주	0	해당없음(5곳미만)					0	
대전	0	해당없음(5곳미만)					0	
울산	0	해당없음(5곳미만)					0	
세종	0		해당없음(5곳미만)					
경기	0		해당없음(5곳미만)					0
강원	0		해당없음(5곳미만)					0
충북	0			해당없	음(5곳미만)			0
충남	0			해당없	음(5곳미만)			0
전북	0		해당없음(5곳미만)					
전남	0		해당없음(5곳미만)					0
경북	0		해당없음(5곳미만)					0
경남	0			해당없	음(5곳미만)			0
제주	0			해당없	음(5곳미만)			0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개	5,45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U-뱅킹업무부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02-2002-5212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리킨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가입비2.선정 점포 실사의대가3.최초 가맹점개점을 위한정보·자료 제공 및인력지원의 대가	3,3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1,100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홍보지원비 	1,98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전 교육비	1,100	상계처리 후 반환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천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0 (부가세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미납 채무 가 있을 경 우
	제공하는 금액		반환	'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천원/부가세포함)
합계	5,400
가맹비	3,300
교육비	1,100
보증금	1,000(VAT 해당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를 포함한 점포별 예상 견적

귀하(신규가입자)가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을 포함한 그 밖에 리킨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기준면적: 66 m² / VAT 포함)

구분	지급 대상 및 내역	금액	면적 3.3 m'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30,800	1,540		
간판 외		4,400	220		
홀집기	<별첨2> 물품 구입	4,950	약248	계약 체결시	소요비용 공제 후
주방집기	및 임차현황 참고	5,280	264	개별 계약	반환
소품 및 판촉물		1,320	66		
초도물품(주류포함)		5,500	275		
합 계	_	52,250	약 2,613	_	_
검수비	 (직접 가맹점 설비 시)	66m²이하는	5,500 /66㎡이상	ֈ은 7,700	

*점포 크기별 수량 및 품목은 점포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지급시기	비고
예치 가맹금(계약금)	₩5,400,000 원	계약 체결 시	(부가세 포함)
착수금	총 금액의 15%	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 및 기타
중도금	총 금액의 40~50%	인테리어 시공 전	설비 및 물품 대금
잔금	나머지 금액	개점 전일까지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전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리킨치킨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규정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규정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사용, 신 메뉴 개발비	가맹 본부	월 총매출액의 1.1%~2.2% (가맹본부 지정업체와 물류 거래 시 차등 적용)	매월 25일	후불제로 반환 없음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단 조리 교육의 경우 1 회 당 1,100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비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장 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가맹 본부 또는 협력 업체 (미정)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 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 2023 년)	내용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11 0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리킨치킨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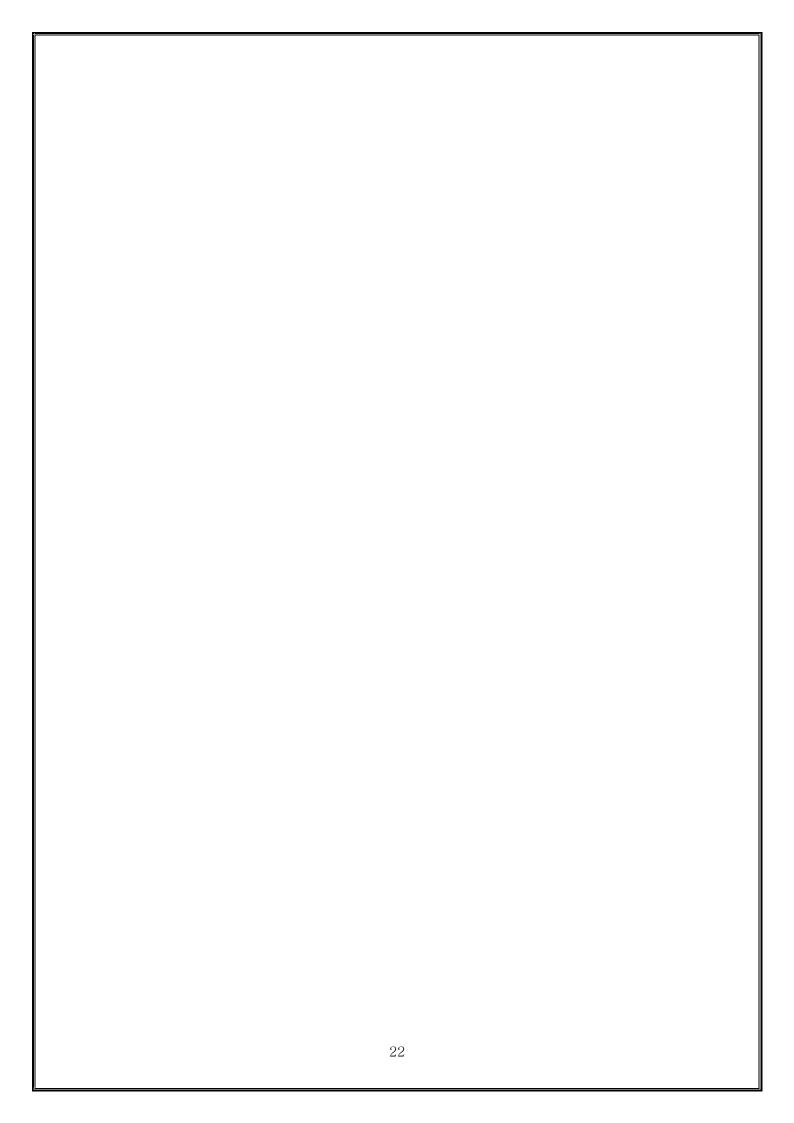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리킨치킨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 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리킨치킨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리킨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공급시기	규격 (품질기준)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별첨 2 참고 >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ᄉѠ ᄑᄆ		공급	가격	구분
군인	품목	목 단위 상한 하힌	하한	干正	
			해당 없음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리킨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년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 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리킨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 취하였습니다.

나.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나. 당사가 리킨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리킨치킨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닭 종류를 튀기거나 구어서 판매하는 업종	리킨치킨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250m(역세권, 중 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되는 경우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	-	-

^{*} 당사는 가맹점 이외의 다른 판매 채널이 없습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리킨치킨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재 계약 시부터는 1년씩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 서	기간(계약만료일:
문 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①+15일 이
까? (예→B, 아니오→A)	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COOL 이저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		
지 못한 경우	77 (2항 각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28 역오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		
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3 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 및 <i>2</i> 항	2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 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 해하는 경우	21조1항	25조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시 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13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5조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1항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1 조 3 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01 2 0 8 7 3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 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리킨치킨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리킨치킨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리킨치킨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닭 종류를 튀기거나 구어서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리킨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5:00 ~ 익일 03:00	주 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심야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서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체크리스트는 가맹계약 체결 후 제공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니고 사건	부담비율		- 브다저워	
구분 광고 성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공동광고	공동광고 상품광고 등		가맹점사업자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ı	_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조(비밀유지 의무), 제 18조 (경업	710121011
및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가맹계약서
금오천만원(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제33조 제2항
위약벌로 금오백만원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TUOO T TUO = 1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제33조 제3항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U.O.O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제33조 제4항
한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제 이 자 - 제 다음니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5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제33조 제6항
배상하여야 한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TIOO T TI 3 -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정보공개서 제공 후 대략 45일)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433-1008).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1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상이함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1 일	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1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약 27일	
설비 및 집기 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개점 전후 병행	
개점	개점 리허설 오프닝 행사	_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인테리어 일정표는 계약 체결 시 제공 됩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0	점포의 시설, 장비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노	ㅇ 인테리어 공사	이전을 수반하지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로부터 3년 이	
	후화가 객관적으로	비용(장비·집기의 교	않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에 가맹본부	
	인정되는 경우	체비용을 제외한 실	: 20%	서류 첨부) → 90일 이	의 책임없는	
0	위생이나 안전의 결	내건축공사에 소요되	ㅇ 점포의 확장 또	.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사유로 계약이	
	함으로 인하여	는 일체의	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종료(계약의	
	가맹사업의 통일성	비용. 단, 가맹사업	이전을 수반하는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해지·영업양도	
	을 유지하기 어렵	의 통일성과	점포환경개선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	
	거나 정상적인 영	무관하게 가맹점	: 40%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가맹본부 부담	
	업에 현저한	사업자가 추가		에서 분할지급 가능)	액 중 잔여기간	
	지장을 주는 경우	공사를 실시함에 따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에 비례하는	
		라 소요되는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부담액은 지급	
		비용은 제외)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하거나 이미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지그런 거요	
	본부 부담액을 지급	지급한 경우	
	<분할지급 시 절차>	에는 환수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가맹본부	시장조사·판촉, 가맹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_18# -1 -1	피스시
기정순구	점의 경영상 발생하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는 문제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서면 제시		
	및 지도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가맹점 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매저시어지	시장조사·판촉,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가맹점사업자	O컨시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의 경영상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부담	요청시
	발생하는 문제에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대한 분석 및 지도	개선방안 서면 제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리킨치킨의 교육시스템은 가맹점사업자님께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요약 발췌 하여 점포 개점 전 제반 준비사항부터 시작하여 개점 후에 발생되는 실무사항까지를 철저하게 챙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위 교육일정 및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	1,100(VAT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없음	기본 교육 무료	
특별 교육	없음	1,100(VAT포함)	가맹점주 요청 시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u>별첨 1 재무현황</u> 2021 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2 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3 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